

청년 추가 고용장려금 안내

- 청년 1명 추가 채용하는 기업에 900만원씩 3년간 지원 -

지원대상 및 지원요건

<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중소·중견기업에 인건비 지원>

□ 지원대상 기업

-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('17년 말일 or 연평균 기준)인 우선지원대상기업·중견기업이 청년(만15세 이상 34세 이하)을 정규직으로 신규(추가) 채용한 사업주
- ※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2조(우선지원대상기업),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(중견기업)
- ※ 단, 성장유망업종, 벤처기업, 지식서비스산업 등은 피보험자 수 1인~4인도 가능
- ※ (지원제외) 부동산업, 소비·향락업, 국가·지자체로부터 지원 등을 받는 사업장 등

□ 기업 요건

- ① 기업 규모에 따라 2018년말까지 다음과 같이 청년을 신규(추가) 채용

기업규모별 지원대상 고용 요건	기업 규모	청년 신규채용
	30인 미만	1명 이상 채용 시 지원
	30인~99인	2명 이상 채용 시 지원
	100인 이상	3명 이상 채용 시 지원

- ② '2017년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'를 기준으로 2018년 청년을 추가 채용하여, 기업 전체 근로자(피보험자)수 증가해야 함

* (예시) '17년도말 기준 피보험자수가 10명인 기업에서, '18년도에 청년 1명을 정규직 신규채용하고, 11명 이상으로 기업 피보험자수를 증가시켜야 지원가능

□ 신규채용 청년 요건

- '18.1.1.이후 만 15~34세(군필자 복무기간 비례)의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
- * '18.1.1.이후 인턴·기간제로 채용 후 '18.12.31.까지 정규직으로 전환(인턴·기간제의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불인정)한 경우 전환시점부터 지원대상
- ※ (지원 제외) ①1개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미만 근로자, ②정규직 채용일 현재 대학교·고등학교 재학중인 자 (단 대학·마지막 학기 재학 중인 졸업예정자, 고등학교·마지막 학기 교육과정 종료 후 취업한 자는 가능), ③사업주의 배우자, 4촌 이내 혈족·인척, ④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등
- 월임금이 1,573,770원(주40시간 월최저임금 수준) 이상 일 것
- * 시간제근로자로서 월임금이 75만원 이상 1,573,770원 미만인 경우 지급 임금의 1/3 지원

지원수준 및 지원한도

□ 지원 수준

- '18.3.15.이후 청년 신규 채용 1인당 연 최대 900만원을 3년간 지원 (월 지원액 75만원)
- 기업규모에 따라 30인 미만은 1명만 고용해도 지원, 30~99인은 2명 이상 채용 시 지원, 100인 이상은 3명 이상 채용 시 지원(채용인원 수에 비례하여 지원)

지원(예시)	1명 고용	2명 고용	3명 고용	4명 고용	
30인 미만	900만원	1,800만원	2,700만원	3,600만원	
30~99인	x	1,800만원	2,700만원	3,600만원	
100인 이상	x	x	2,700만원	3,600만원	

* 청년대책 발표일 이전인 '18.1.1.~3.14. 기간내 채용자에 대해서는 제도개편 전 지원액인 1인당 연 최대 6,666,660원 지급(월 지원액은 555,550원)

□ 지원 한도: 기업당 최대 90명까지 지원

□ 신청시기 및 지원기간

- 지원대상 청년을 고용하고 6개월 이내 지원금 신청해야만 지원 (6개월을 초과하여 장려금을 신청한 경우 부지급)
- 지원대상 청년을 고용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달부터 1개월 마다 신청서 등 제출
- 최초 지원 대상 청년을 채용한 날부터 3년간 지원
- 지원기간은 기업규모별 최저 고용요건을 충족하는 청년을 채용한 날부터 시작
- ※ 기업의 최초 지원 시작일 이후 추가로 채용된 청년근로자마다 각각 3년간 지원되는 것은 아님 (기업의 지원기간 시작일과 종료일은 고정)

지원신청 방법 등

□ 신청 방법

- 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고용센터(기업지원팀)에 방문·우편 신청 또는 고용보험시스템(www.ei.go.kr)을 통해서 온라인 신청
- (신청 서류) 「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급 신청서」, 장려금 지급대상 근로자의 근로계약서, 월별임금대장, 임금지급증빙서류, 확인서 등

☞ 세부내용: <부천시청>「부천고용복지+센터」홈페이지 → 공지사항(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사업 안내) 참고
<김포지역>「김포고용복지+센터」홈페이지 → 공지사항(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사업 안내) 참고

문의·상담 ☎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(국번없이) ☎ 1350